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9
----------	-----

발의년월일 : 1993. 5. 8.

발 의 자 : 조승남 의원외 8인

1. 수정 이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및 시기성이 결여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증액및 삭감하였음.

2. 수정 내용

- 1)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제3000장, 제3100관, 제3130항, 노인일거리 제공비 '2,925천원'
을 '5,850천원'으로 '2,925천원' 증액하고
노인회관 증축 (동명동)비 '35,000천원'을 '40,000천원'으로 '5,000천원' 증액한다.
- 2) 제4000장, 제4100관, 제4175항, 농촌지도자 회의 급식비 '610천원'을 '1,054천원'
으로 '444천원' 증액한다.
- 3) 제4000장, 제4300관, 제4330항,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2,500천원'을 '1,000천원'
으로 '1,500천원' 삭감한다.
- 4) 제4000장, 제4300관, 제4340항, 해수욕장 철골상가 제작비 '32,000천원'을
'28,000천원'으로 '4,000천원' 삭감한다.

5) 제5000장, 제5200관, 제5210항, 노학동사무소에서 한전변전소간 도로개설사업비

‘210,000천원’을 전액 삭감한다.

6) 제6000장, 제6100관, 제6110항, 속초의노래 심사사례비 ‘300천원’을 ‘150천원’

으로 ‘150천원’ 삭감한다.

7) 제8000장, 제8400관, 예비비 ‘392,427천원’을 ‘599,708천원’으로 ‘207,281천원’

증액한다.

에 산 총 칙

제 1 조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수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계 별		세입 세출 예산총액	일시 차입 한도액	비 고
합 계		81,338,488	2,433,600	
일 반 회 계		40,697,928	1,220,000	
특 별 회 계		40,640,560	1,213,600	
공 입	계	22,213,000	665,000	
	상 수 도 입 특 별 회 계	10,732,000	321,000	
	공 영 개 발 사 입 특 별 회 계	11,481,000	344,000	
기 타 특 별 회 계	계	18,427,560	548,600	
	하 수 도 사 입 특 별 회 계	874,920	26,000	
	주 택 사 입 특 별 회 계	2,687,492	80,000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680,414	20,000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특별회계	147,005	4,000	
	새마을 소득 금고 특 별 회 계	23,226	600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149,287	4,000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 별 회 계	216,240	6,000	
	공 유 립 권 리 특 별 회 계	1,032,864	30,000	
	지 방 양 어 금 특 별 회 계	12,616,112	378,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 세입 · 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1993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 계속비조시 "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2,427천원으로 한다.